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4. 예비비 지출 현황

○ 일반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46,289,000	43,832,140	2,456,860	
문화체육과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15,000,000	14,069,000	931,000	서서울미술관 건립 착공을 위해 부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철거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6,517,000	6,319,000	198,000	당초 해체 심의 비대상으로 비상주감리로 금액을 산정했으나,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관련 해체 심의 대상으로 변경되어 상주감리로 진행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24,772,000	23,444,140	1,327,860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지하3층 기계실 점검 결과 스티ம்ப관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긴급 보수공사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133,000,000	131,204,450	1,795,550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지원	133,000,000	131,204,450	1,795,55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인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함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지출 문화체육과 3건 4,383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1건 1억 3,120만원을 지출함
- 문화환경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